

권리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 ]
전화번호	[ ]

##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 (대표자) : 이 [ ] 법인등록번호 : [ ]
2. 상호 : 이 [ ]
3.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 ]
4. 사업의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장소 : 건물위
5.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설비용량 : 177.3 KW  
공급전압 : 380 V 주파수 : 60 Hz
6. 특정공급구역 :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 2021년 08월 23일 ~ 2023년 02월 22일
8. 허가조건 : 검토의견서(허가조건)에 준함
9. 기타 : 대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1년 08월 23일

김 해 시



#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증

발급번호: [ ] 발급일 2022. 1. 18.

허가를 받은 자  
 성명 : 이 [ ] 법인번호: [ ]  
 주소 : [ ]

공작물 설치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면적	허가신청 사항			
					구조	신청면적	중량	부피
	상동면 [ ]	[ ]	대	1,439.08㎡	태양광 (각관구조)	1,439.08㎡	16.93ton	2,252㎡

목적: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간: 2022. 1. 18. ~ 2025. 1.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김해시



## 허가조건

- ★ 우리 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부서 협의시 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관계부서 협의 조건 사항을 이행하시고 대수선 준공을 득하신 후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준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 협의 조건 사항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 1팀)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대수선 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1. 공사 시행 시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 분진 및 인근농지, 주변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시 사업주가 책임지고 해결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예방조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이라도 허가권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확인)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작업종료 상황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REDACTED]		계약번호	[REDACTED]	
발전사업자	고객명	이**)		상 호	이 [REDACTED]
	대인번호	135811-0*****		전화번호	031-660-****
	주소	지번	[REDACTED]	상업운전희망일	
		도로명	[REDACTED]	2022-02-2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력	176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전압	380V
설치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REDACTED]		
설비용량	175.9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전)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전력수급계약(PPA)
전력거래형태	한전거래		
사용권 점검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 공사업체	이엘티 주식회사
시설부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 ), 지중( )
설비관리자명	민**진	연락전화	010-8858-****
SMS 수신번호	010-8858-****		

###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전의 접속발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경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 ※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건 접수는 효력을 잃고,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7일

부산울산본부 김해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행번호 제 [ ] 호

고객번호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이 [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 ]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상용 발전설비 (태양광) 380(V) 175.95(kW)		
	검사연월일	2022-09-14		
	검사자	소속	김해양산지사	성명 [ ]
	판정	합격	다음검사	2026-09-14
임시사용	허용사유 :			
	사용기간 :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			
기타 :	1.분전반 및 접속반 내에 발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외관상 모듈의 파손이나 지지대의 균열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소내전력 3kw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22 년 09 월 14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검사신청인	[ ]	귀하		